

1. 개정이유

러시아에 진출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한 러시아 법인의 경우 러시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합작비율을 기존 50%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합작기업체의 국내 지분기준이 24%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합작수산물의 관세면제 요건 예외사유 신설

- 1)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지분율 25%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작법인의 지분기준이 24%이상인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19. ~ 11. 2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2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 ⑤ (생략)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인과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	⑥----- ----- ----- ----- ----- 말한다. <u>다만,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2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u> ----- ----- ----- ----- ----- ----- ----- ----- -----

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 ⑪ (생 략)	----- ----- -----. ⑦ ~ ⑪ (현행과 같음)
---	---